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권형례, 오영세 의원외 5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15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일 권형례·오영세의원의 5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 및 효행 문화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.
- 나. 효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, 업무, 지도·감독 규정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.
- 라. 효의 날을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였음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.
- 마.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바.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사.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
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산업화·도시화로 인하여 세대분가와 개인주의 팽배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,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인식 부족 및 효행문화 정책 증진을 위한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·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3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4조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사항을,
- 안 제5조는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6조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7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의 날을 매년 10월 2일로 정함.
- 안 제8조는 효행 우수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9조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0조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1조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“효(孝)를 시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“효문화지원센터“의 설치, 효의 날 지정,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,

이는,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조례안 제3조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, 제9조(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), 제10조(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), 제11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의 규정은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,

이는, 법 소관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,

조례안 제7조(효의 날)인 10월 2일은 “노인의 날”로 금번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“효의 날”과 중복됨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